

춘천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306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30697 판결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. 1. 19 선고 2020가단1225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원

담당변호사 한상철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탁

변론종결 2022. 11. 10.

판결선고 2022. 12. 15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. 1. 19. 선고 2020가단12252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광업권(채굴권)에 관하여 2020. 4. 16.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별지목록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20. 4. 17. 접수 D 및 E로 마친 각 광업권이전등록청구권의 가등록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.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두봉, 판사 신흥호, 판사 여현주